

2025년 신규기관 평가 교육컨설팅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2024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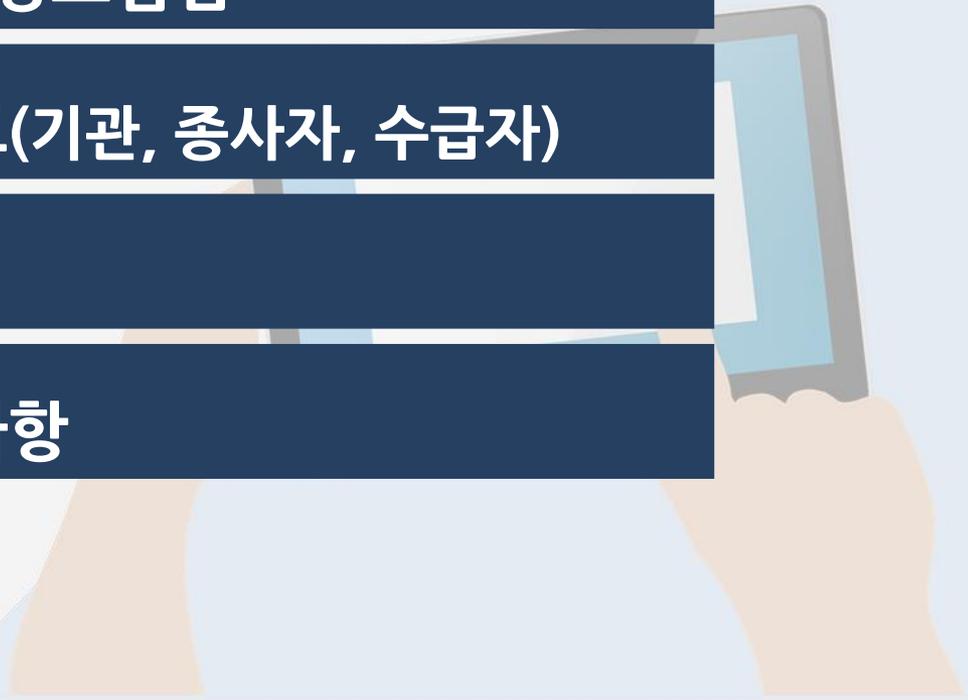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6 기타 안내사항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6

기타 안내사항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 알권리 충족·선택권 확대

-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방법 다양화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 평가결과 하위기관 수시평가
- 사전·사후 관리로 서비스 개선 지원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나. 평가 구분

정기
평가

3년 주기로 장기요양 기관평가 실시(절대평가, A~E등급)

시설
(기간연장)

재가
(짝수)

재가
(홀수)

시설
(전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시
평가

수시평가
미실시

시설
(전체)

재가
(짝수)

재가
(홀수)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및 미평가기관 재평가 실시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다. 평가 방법

평가예정통보

- (1차) 정기평가 계획공고 후 30일 이내 평가일정(분기별) 사전 안내
- (2차)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평가예정통보서' 서면 통보
- 평가일정 · 평가예정일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 조회

기관 방문, 수급자 및 종사자 방문 평가

기관 방문 현장평가 : (요,목,간,복) 2인 1팀, (주,단) 3인 1팀 등

※ 기관 규모 등에 따라서 평가자 추가 가능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 상담 · 총평 후 전자조사표 전송 및 확인(불가피할 경우 복사본 교부)

수급자·종사자 평가 : 외부평가자 2인 1팀이 방문하여 면담, 관찰 등 평가

※ 주야간, 단기보호 수급자·종사자 평가(외부평가자),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공단)는 기관 방문시 수행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라. 평가 등급 결정 및 조정

평가 등급 결정

-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각 70점 이상
- B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각 60점 이상
- C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각 50점 이상
- D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각 40점 이상
- E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라. 평가 등급 결정 및 조정

평가 등급 조정

- 행정처분 등에 따른 1개 등급 하위 조정
- 부담청구 등에 따른 등급 조정
- 최하위 등급 조정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마. 평가 결과공표

- 평가결과 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등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최근 및 직전 평가결과 2회)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수준 ★개수 및 총점 표시

| 급여종류 | 구분 | 총점 |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제공 | 서비스결과 | |
|---------------|--------------|-------------|-------|---------|---------|-------|-------|
| 입소시설 30인이상 | A(최우수) | 100 | 28 | 24 | 25 | 23 | |
| | 2025 정기평가 | 98 ★★★★☆ | 27 | 24 | 24 | 23 | |
| | 전체평균 | 81 | 23 | 19 | 21 | 18 | |
| 급여종류 | 구분 | 총점 | 기관운영 | 환경 및 안전 | 수급자권리보장 | 급여제공 | 제공결과 |
| 입소시설 30인이상 | B(우수) | 86.35 | ★★★★☆ | ★★★★★ | ★★★★☆ | ★★★★★ | ★★★★☆ |
| | 2021 정기평가 | | 78 | 95 | 66 | 91 | 78 |
| | 전체평균 | 83.56 | 78 | 93 | 76 | 79 | 84 |

(예시)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 정원 | 소재지 | 연락처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평가 영역별 점수 | | | | 급여종류 노인요양 시설 |
|--------|-----|--------------------|-----------------------|-------------------|------|-----------|-------|-------|-------|--------------------|
| | | | | | |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제공 | 서비스결과 | |
| 00요양원 | 00명 | 서울시 00구 0로 1 | 010- 1234- **** | A(최우수) 2025 정기 | 98 | 27 | 24 | 24 | 23 | ○ |

* 평가등급 표기: 평가등급,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신설기관

※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추진계획 참고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마. 평가 결과공표

평가 결과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결과통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예시) [정기]

| | | | |
|---------|-------------|----------|--|
| 장기요양기관명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대표자 | |
| 평가년도 | | 평가등급 | |

| 구분 | 총점 | 기관운영 | 환경 및 안전 | 권리보장 | 급여제공 | 제공결과 |
|----------------|--------|-------|---------|-------|-------|-------|
| 환산점수 (배점비중) | 100.00 | 15.00 | 25.00 | 11.00 | 39.00 | 10.00 |
| 점수 | 90.00 | 13.00 | 22.00 | 10.00 | 36.00 | 9.00 |
| 전체평균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바.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

가산금 지급기준

가산금 지급 대상기관: 급여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A등급
& 대분류 각 영역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기관

- 상위 10% 범위 내 기관: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복지용구사업소: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 1%
- 상위 10% 초과 ~ 20% 이하 기관: 평가 직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
※ 복지용구사업소: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 0.5%
-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기평가 계획공고 참고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바. 평가 가산금 지급 및 제외

가산금 지급 제외기준

- 평가등급 **하향조정(차하위 또는 최하위)사유**가 발생한 기관
- 가산 지급 전에 **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된 기관
-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 의뢰된 기관**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 보류
 - ※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및 평가 등급 조정**
- 기타 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사. 평가 점수 구성

| 구분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주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
|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문항 | 점수 |
| 계 | 34 | 100 | 34 | 100 | 34 | 100 | 48 | 100 | 46 | 100 | 28 | 100 |
| 기관운영 | 9 | 20 | 9 | 20 | 8 | 18 | 11 | 19 | 11 | 19 | 5 | 14 |
| 환경및안전 | 3 | 9 | 4 | 10 | 5 | 13 | 12 | 22 | 12 | 22 | 7 | 25 |
| 수급자권리보장 | 7 | 22 | 7 | 22 | 7 | 22 | 5 | 12 | 5 | 13 | 6 | 23 |
| 급여제공과정 | 9 | 31 | 10 | 34 | 9 | 31 | 15 | 32 | 13 | 30 | 5 | 20 |
| 급여제공결과 | 6 | 18 | 4 | 14 | 5 | 16 | 5 | 15 | 5 | 16 | 5 | 18 |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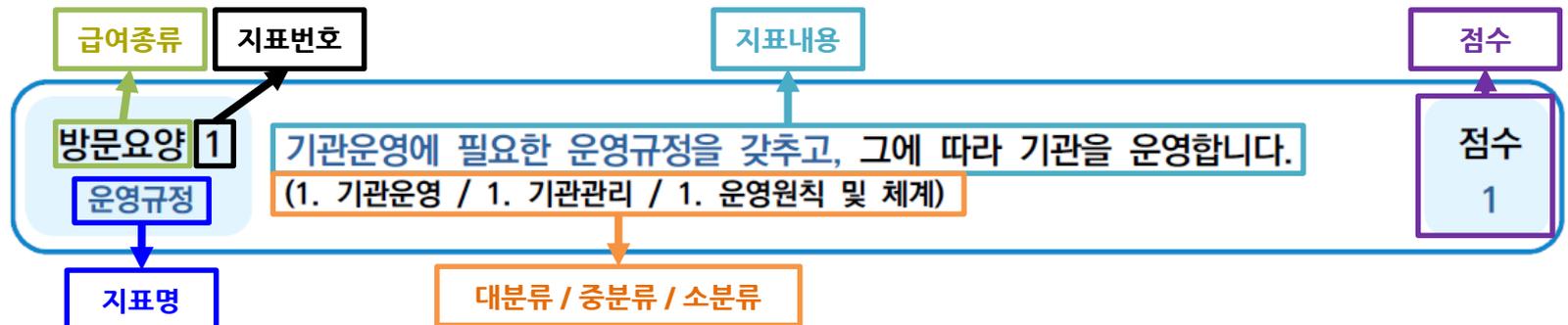
기타 안내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가. 평가 매뉴얼 구성

평가 매뉴얼 구성

-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
-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방법
-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가. 평가 매뉴얼 구성

방문요양 2
직원회의
점수
3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 공통지표: 요(방문요양), 목(방문목욕), 간(방문간호)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목적

| 평가기준 | | | 평가방법 |
|------|------|---|------|
| ① | 기관 |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기록 |
| ② | 기관 |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 ③ | 기관 |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척도 | 점수 | 채점기준 | |
| 우수 | 3 |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 |
| 양호 | 2.25 |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 |
| 보통 | 1.5 |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 |
| 미흡 | 0 |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확인 방법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나. 평가 방법

평가 방법

- 기관 관련문서나 자료 등의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 **관찰·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현황 등을 파악,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해 영수증 및 지출내역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행 일자 확인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나. 평가 방법

평가 방법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 원칙으로 함(단,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1365, VMS)은 인정함)
-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일 현재, 평가 당일 평가종료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함(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
- 종사자,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 실시
(단, 주야간·단기보호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는 기관 방문 현장에서 평가)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다.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

장기요양기관 협조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라. 평가 문항 척도

평가 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우수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양호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보통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미흡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해당
없음

평가지표 적용불가
(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마.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급여제공직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함

직원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함

평가종료월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함

평가계획 공고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함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씀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마. 용어 설명

용어 설명

비치

잠금 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마련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보관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자체점검

6 기타 안내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시행 2019.12.12.)

-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2,771개소 신규 개설되고, 112개소(4.04%) 폐업함('25.3.11.기준, 기관기호별)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 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19.12.12.)

※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 강화)

< 평가 결과와 연계한 부실운영기관 퇴출 >

- 기관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 기관 관리 강화

: 기관평가 미흡, 행정처분 이력 등으로 갱신기준 미충족 기관은 심층평가 후 퇴출 실시('25.12월~)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19.12.12.)

※ 제1항 제3호의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 제7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6 기타 안내사항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운영규정 11개 항목

요,목,간,주,단

-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주,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운영규정 6개 항목

복지용구

- 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③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④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⑤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⑥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요,목,간,주,단

- | | |
|-----------------|-----------------|
| ① 종사자 윤리지침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

복지용구

- ① 종사자 윤리지침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③ 복지용구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 ④ 노인인권보호지침
- ⑤ 개인정보보호지침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제품 관련 비치 자료

복지용구

-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비치
(복지용구 전량 소독업체 위탁시 기준 충족, 대여제품 미취급 '미흡')
-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 비치
- 복지용구 전시 및 안내책자 비치 (이동변기 등 18개 품목)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6개** 항목

요,목,간

- ① 운영규정의 개요
- ②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④ 노인학대 신고기관
-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⑥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9개 항목

주, 단

- ① 운영규정의 개요
- ②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③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⑤ 프로그램표
- ⑥ 근무현황표
- ⑦ 노인학대 신고기관
- ⑧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⑨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4개** 항목

복지용구

- ① 운영규정의 개요
- ②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 ④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기관 비치 자료



기관 게시 자료

식단표 게시

주,단

-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 게시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홈페이지 정보게시

✓ 시군구 신고 / 홈페이지 등록 항목

요,목,간,주,단,복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

■ 시군구 신고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요,목,간,주,단),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주, 단)

◆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000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화면 정보게시 매뉴얼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홈페이지 정보게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영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신청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시범)
 급여제공서식
 기타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장기요양기관관리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영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6조에 의한 것입니다.

97%
 항목보기
 만정보 게시율이 97%입니다.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정원·현원
 비급여항목

홈페이지 주소 www. .kr
 교통편 <대중교통 이용시>
 주차시설 지상1층, 지하1층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N Y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른 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N Y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N Y 나의 블로그 > 공지사항에 게시한 후, Y로 체크

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력(변경)현황, 시설(변경)현황
-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정보게시사항 중 기관에서 변경할수 있는 항목

- 교통편, 주차시설, 홈페이지 주소, 현원, 예약대기자 현황, 비급여항목, 사진, 공지사항

◆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영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홈페이지 정보게시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 요양자원>장기요양기관 관리

정보게시율 97% 항목보기
 * 기관정보 게시율이 97%입니다.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정원·현원 | **비급여항목** | 프로그램운영 | 계약의사 현황 | 협약기관 현황 | 게시·준수사항 | CCTV 설치 현황 | 사진 | 공지사항 | 게시판

홈페이지 주소: www. [redacted].kr
 교통편: <대중교통 이용시>
 주차시설: 지상1층, 지하1층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N Y
 손해배상책임보험 N Y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N Y

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력(변경)현황, 시설(변경)현황
 *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_정보미게시사항([npra301])

단기,주야간보호 정보게시항목 닫기

| 게시항목 | 상태 | 최종변경일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통편 | 게시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차시설 | 게시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페이지 | 게시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원현원 | 게시 | 2021-12-22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급여항목 | 미게시 | 2021-11-24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운영 | 게시 | 2021-11-19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 게시 | |

* 현원정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의 경우 내용(최종변경일)이 3개월이상 변경사항이 없으면 게시율이 떨어집니다.

4

운영 흐름도

가. 기관운영

홈페이지 정보게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신청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시범) 급여제공서식 기타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

정보게시율 97% 기관정보 게시율이 97%입니다.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정원·현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 계약의사 현황 협약기관 현황 게시·준수사항 CCTV 설치 현황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사진 전체

| 순번 | 분류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수정일 | 등록일 |
|----|------|-----|----|-----|-----|-----|
| 공지 | 프로그램 | 링고리 | Y | 492 | | |
| 공지 | 프로그램 | 불발 | | | | |
| 공지 | 프로그램 | 세상 | | | | |
| 공지 | 프로그램 | 동화 | | | | |

분류: 프로그램, 공지

제목: 링고리깨우기

내용:

첨부파일: 링고리깨우기.JPG

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력(변경)현황, 시설(변경)현황
-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23호)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신청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관리 기관평가 급여제공통합관리(시범) 급여제공서식 기타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npra301m01

정보게시율 97% 기관정보 게시율이 97%입니다. 미게시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정원·현원 비급여항목 프로그램운영 계약의사 현황 협약기관 현황 게시·준수사항 CCTV 설치 현황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 등록수점

| 순번 | 2022년 2월 |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표(치매전담) | 파일 | 조회수 | 수정일 | 등록일 |
|----|----------|-----------------------------|----|-----|-----|-----|
| 1 | 2022년 2월 |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표(치매전담) | Y | 6 | | |
| 2 | 2022년 2월 |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표(일반) | Y | 2 | | |
| 3 | 2022년 2월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센터) | Y | 9 | | |
| 4 | 2022년 1월 |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일정표-치매 | Y | 5 | | |

공지: 고정안함

제목: 2022년 프로그램 일정표(치매전담)

내용: 2022년 프로그램 일정표(치매전담)

첨부파일: 2022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정보게시사항 중 시군구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항목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력(변경)현황, 시설(변경)현황
- 위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노인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23호)에 의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고 하시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정보게시사항 중 기관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

- 교통신, 주차시상, 홈페이지 주소, 현원, 예약대기자 현황, 비급여항목, 사진, 공지사항



4 운영 흐름도

나. 종사자 관리

입사

건강검진

★ 건강검진

- ✓ (주기) 매년
- ✓ (대상) 모든 직원
- ✓ (평가방법) 기록

※ 신규입사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1년 이내의 검진결과제출
(검진일 기준)

(요, 목, 간, 주, 단)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 보수 지급 여부

★ 보수 명세서 제공

✓ (평가방법) 면담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급여제공역량관리

★ 규정 및 지침 교육

- ✓ (주기) 연 1회
- ✓ (대상) 모든 직원
- ✓ (평가방법) 면담

※ **신규직원** 교육 내용
: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요, 목, 간, 주, 단, 복)



4 운영 흐름도

나. 종사자 관리

건강검진 결과 인정 예시

| | | | |
|----------------------|---|--------------------|---|
| 흉부X-RAY | 정상 | 폐색반응 | 정상 |
| 간염검사 | 음 | 기타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 2019-07-31 | |
| 검사자 면허번호 | | 호 | 의사명 |
| 검사결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상 | 간염예방접종 | <input type="checkbox"/> 필요 |
| 합격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합격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필요 |
| 정양신체검사 | <input type="checkbox"/> 필요 | 불합격사유및 | |
| 직업검사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필요 | 환자유의서형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으므로 증명합니다. | | 2019-07-31 | |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 발행일: 2019-07-31 | |
| | | 병입명: [Redacted] 의사 | |

검진일자, 판정일자
모두 확인하여
인정



4

운영 흐름도

나. 종사자 관리

5대 보험 및 퇴직금, 직원복지향상

요,목,간,주,단

★ 5대 보험 가입,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 사회보험가입증명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보수에 포함 지급 X, 중간정산 시 관련 근거자료 확인 ○

★ 직전 정기평가결과 가산금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

- ✓ 해당 기관만 사용내역 확인

★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 분기별 1회 이상 제공

- ✓ (평가방법) 기록

직원회의

요,목,간

★ 회의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주기) 매월 1회 이상
- ✓ (참석률) 50% 이상
- ✓ (대상) 실제근무 직원
- ✓ (평가방법) 기록



4

운영 흐름도

나. 종사자 관리

직원교육

요,목,간,주,단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인권침해 대응지침, 고충처리 절차
교육 및 숙지

- ✓ (주기) 연 1회
- ✓ (대상) 모든 직원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및 숙지

- ✓ (주기) 연 1회
- ✓ (평가방법) 면담, 기록
- ✓ (대상) 모든 직원

요,목,간,주,단,복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요,목,간,주,단)

급여계약

★ 급여제공안내

- ✓ 급여제공 내용 설명
- ✓ 급여계약서 부분 제공

- ✓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 안내
- ✓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안내

요,목,간

★ 급여계약 체결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 ✓ 급여계약통보서 전월 말일까지 통보

위험도 평가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

- ✓ (주기) 연 1회 이상
- ✓ (작성자) 해당급여직원
-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에만 인정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요,목,간,주,단)

욕구사정

★ 수급자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 실시

- ✓ (주기) 연 1회 이상
- ✓ (작성자) 해당급여직원
-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서술형)

■ 욕구사정 8개 항목 (+ 판단근거)

신체,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 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욕구, 자원이용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요,목,간,주,단)

급여제공계획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욕구평가, 위험도평가 등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 수립

✓ (주기) 연 1회 이상

✓ (작성자) 해당급여직원

■ 필수사항 :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

■ 급여제공계획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및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통보

급여제공적절성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및 변경사유 기록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요,목,간,주,단)

급여제공 결과평가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후 제공결과를 평가 및 급여에 재반영

✓ (주기) 연 1회 이상

■ 필수사항 :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

■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 (주기) **요,목,간** 주 1회

주,단 월 1회

※ RFID의 경우 월 1회 제공 가능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요,목,간,주,단)

상담관리

★ 방문상담관리

요,목,간

- ✓ (주기) 매월
- ✓ (상담직원)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

★ 수급자 상담관리

주,단

- ✓ (주기) 분기별 1회 이상
- ✓ (상담방법) 유선통화도 인정
- ✓ (상담직원)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

수급자 안전관리

주,단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 자료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설명함 (평가방법: 기록)

★ 수급자(보호자)에게 예방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설명함

요,목,간

- ✓ (제공내용) 6 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
- ✓ (평가방법) 수급자 평가 시 현장 확인 및 면담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복지용구)

급여계약

★ 급여계약 설명

- ✓ 제품의 수리 및 교체(A/S)방법,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 등 의견 반영하여 급여계약

★ 연장대여동의서 작성

- ✓ **필수사항** :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욕구사정

★ 수급자 욕구사정

- ✓ (주기) 연 1회 이상
- ✓ (내용) 욕구사정 4개 항목
- ✓ (작성자) 해당급여 직원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2.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3. 가족 및 환경상태
4. 희망급여 : 보유중인 품목, 희망품목



4

운영 흐름도

다. 수급자 관리(복지용구)

상담관리

★ 수급자 상담관리

- ✓ (주기) 매월 1회 이상
- ✓ (상담방법) 방문 또는 유선상담
 - ※ 단,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 (상담직원) 해당급여 직원

★ 급여제공기록지 월 1회 이상 제공

- ✓ (구입) 제품 제공 시
- ✓ (대여) 최초 제공 시, 회수 시, 대여기간 중 매월 제공 여부 확인

정보제공

★ 제품사용 설명

- ✓ (내용) 제품 이용 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사용설명서 제공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5

자체점검

가. 자체평가, 자체점검

자체평가, 자체점검

- ✔ **자체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 스스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
 - 자체평가 : **모든 기관**이 상시 점검 가능(정기평가 지표 기준)
 - 자체점검(신규) : **신규 기관**이 신규 운영컨설팅 사업 대상기관 선정 전 실시 (신규 운영컨설팅 점검항목 기준)

○ 자체평가 등록 nprb100m0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체평가란?

• 평가구분 자체점검(신규) • 급여종류 04.방문요양 • 평가관리번호 • 조사영역 전체

| No | 자체평가 자체점검(신규) | 관리번호 | 급여종류 | 장기요양기관번호 | 장기요양기관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자체점검

가. 자체평가, 자체점검

자체점검 등록 방법

- 등록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 로그인 > 업무포털 접속 > 기관평가 > 자체평가 > 자체평가 등록

요양자원 급여계약 복지용구계약 가산및감액산정 급여비용청구 RFID 지급/기타정수 기관평가 급여제공서식 기타 개발가이드 디자인 가이드

자체평가 등록 nprb100m0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권리 평가)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평가 실시)그 결과에 따라 잘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합니다. 공단은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프로그램을 제공

• 급여종류 이.입소시설30인이상 • 평가관리번호 • 조사영역 전체

| No | 평가관리번호 | 급여종별 | 장기요양기관번호 |
|----|--------|-------------|----------|
| 1 | | 이.입소시설30인이상 | |

기관평가 > 자체평가 등록

자체평가 등록

기관평가>자체평가

자체평가란?

조회

| 기관명칭 | 조사영역구분 | 대상자명 | 결과완료 |
|------|--------|------|------|
| | 기관 | | N |

5

자체점검

가. 자체평가, 자체점검

결과 확인

- 결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 로그인 > 업무포털 접속 > 기관평가 > 평가조사표
(평가구분, 급여종류, 평가연도, 평가관리번호 선택 및 조회)

○ 평가조사표 nprb103m01

• 평가구분 **자체평가** • 급여종류 04.방문요양 • 평가연도 2025 • 평가관리번호 **조회**

□ 평가결과 목록

| No | 평가구분 | 급여종류 | 기관번호 |
|----|-------------|------|------|
| | 정기평가 | | |
| | 수시평가 | | |
| | 자체평가 | | |
| | 신규운영컨설팅 | | |
| | 자체점검(신규) | | |

조회결과 - 건

평가결과 세부내역

| 구분 | 총점 | 기관운영 | 환경.안전 | 권리 및 책임 | 급여제공 |
|------|---|---|---|---|---|
| 해당기관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제공결과 | 가점지표 | 종사자관리 | 수급자관리 |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목 차

1 장기요양 평가 일반사항

2 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 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6

기타 안내사항



6

기타 안내사항

가.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

매뉴얼 및 Q&A

-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 (공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
 - (공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1차)
 - (공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6

기타 안내사항

가.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

매뉴얼 및 Q&A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알림·자료실

- 알림방
- 홍보관
- 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 평가매뉴얼 및 Q&A
 - 평가결과
 - 부정 평가기관 신고
- ☞ 뷰어 다운로드




Long-term Care Insurance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집니다.

☐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제목 🔍 검색

Total 14 (1 / 2 page)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
| 공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_수.. | 요양심.. | 2025-01-22 | 📎 | 694 |
| 공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 요양심.. | 2024-12-23 | | 590 |
| 공지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 요양심.. | 2024-12-19 | 📎 | 141E |
| 공지 |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 관리자 | 2024-02-05 | 📎 | 233E |
| 공지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1차) | 관리자 | 2024-02-01 | 📎 | 114C |
| 21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 요양심.. | 2024-12-23 | 📎 | 900 |



6

기타 안내사항

가. 공지사항 및 매뉴얼 확인

주요 공지사항

-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 (공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
 - (공지) 2025년 정기평가(시설급여) 분기별 일정 확인 안내
 - (공지)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 (공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평가지표(질향상노력) 변경사항 안내
 - (게시번호 4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6

기타 안내사항

나.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

동영상 교육자료

-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게시번호 66050)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
 - (게시번호 60049) '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 동영상 ...



6

기타 안내사항

나.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

동영상 교육자료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이력 코너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장기요양 업무 안내 e-Book
- 구인·구직
- 뷰어 다운로드


PDF


HWP

Long-term Care Insurance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집니다.

▣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제목 ▾
🔍 검색

Total 50 (1 / 6 page)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 | 조회 |
|-------|---------------------------------------|-----|------------|----|------|
| 60050 |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 관리자 | 2023-12-18 | | 1927 |
| 60049 | '장기요양기관평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이해' 동영상 자료 게시.. | 관리자 | 2023-09-26 | | 3596 |

감사합니다

